

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이종욱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07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17.

발의자 : 이종욱 · 안철수 · 배준영

김승수 · 이종배 · 송언석

최은석 · 추경호 · 김상훈

박대출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기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.

그런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인구가 감소하는 등 소멸위기에 처한 곳이 상당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지역 이외의 지역 중 수도권과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주택 취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71조의2).



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2조제1항 전단 중 “세종특별자치시(이하 이 조에서)”를 “세종특별자치시(이하 이 조 및 제71조의2제1항에서)”로 한다.

제71조의2의 제목 중 “인구감소지역”을 “인구감소우려지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인구감소지역에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”로, “인구감소지역주택”을 각각 “인구감소우려지역주택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인구감소지역주택”을 “인구감소우려지역주택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인구감소지역주택”을 “인구감소우려지역주택”으로 한다.

### 1. 인구감소지역

### 2. 수도권 · 광역시 또는 세종시 외의 지역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인구감소우려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

이후 인구감소우려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「법인세법」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.	
② ~ ⑨ (생략) 제71조의2( <u>인구감소지역</u>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) ① 주택, 조합원입주권(「소득세법」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또는 분양권(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을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(같은 조 제6호의	② ~ ⑨ (현행과 같음) 제71조의2( <u>인구감소우려지역</u>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) ①

1세대를 말한다)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소재지,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(이하 이 조에서 “인구감소지역주택”이라 한다) 1채를 취득한 후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,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「소득세법」 제8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한다.

<신 설>

## **<신 설>**

② 1주택을 보유한 1세대(「종합부동산세법」 제2조제8호의 세대를 말한다)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

----- 다음 각 호의
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-

-----

-----

----- 인구감소우려

지역주택 -----

-- 인구감소우려지역주택 -----

-----

----- 인구감소우려지역

주택 -----

-----

-----

-----

1. 인구감소지역
  2. 수도권 · 광역시 또는 세종시 외의 지역

②

인구감소우려지

역주택

1세대 1주택자로 본다.	-----.
③ (생략)	-----.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<u>인구감소지역주택</u> 취득 확인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<u>인구감소우려지역주택</u> -- ----- -----.